예 산 총 칙

2022년도 본예산

제 1 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207,300,000	36,219,000
일반회계	1,070,000,000	32,100,000
특별회계	137,300,000	4,119,000
공기업특별회계	100,705,057	3,021,152
상수도사업특별회계	73,537,464	2,206,124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6,265,828	787,975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901,765	27,053
기타특별회계	36,594,943	1,097,848
농공단지사업특별회계	500,000	15,000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2,460,000	73,800
일반산업단지용수공급시설공사특별회계	6,761,429	202,843
일반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429,000	12,870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6,137,700	184,131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857,366	115,721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209,224	6,277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1,361,600	40,848
주차장특별회계	6,240,000	187,200
배방공수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5,040	151
배방월천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420,889	12,627
아산시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67,128	2,014
아산신정호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240	7
아산온천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145,327	4,360
아산탕정지구연계교통망구축사업특별회계	8,000,000	240,00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없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4,578,716천원으로 한다. (일반예비비 7,373,156천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6,000,000천원, 내부유보금 1,205,560천원)

제 6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53,6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①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연금부담금 등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② 지방채 원금상환과 금리변동 등으로 인한 이자지출 경비
③ 동일부서·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
④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 세출예산 보조재원 약칭어 설명>

보조금		자체재원
국비 보조금	도비 보조금	
❖ **국** : 국고보조금 ❖ **균**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 **기** : 기금(중앙정부) 보조금 ❖ **특** : 특별교부세	❖ **도** : 도비(도기금) 보조금 ❖ **조** : 특별조정교부금	❖ **시** : 시 자체재원 ❖ **채** : 지방채